

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협정 상대방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협정변경 효력 발생일자		
	협정변경 효력 존속기간		
	공동운수협정 변경사유		
	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명칭과 소재지		

「철도사업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운수협정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동운수협정 변경사유서 1부 2.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해당 철도사업자 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검토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신고수리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신고인에게 통지